

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청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

의안 번호	269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6. 18.

발 의 의 원 : 김보경 의원
곽동환 의원, 신달호 의원
신동윤 의원, 박영동 의원

1. 수정이유

- 당초 조례안에서 지도자 임용, 운영위원회 운영 등의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조례안 제3조(임용 등)에 지도자 신규 임용 모집 절차 추가
- 조례안 제4조(운영위원회)에 위촉직 임기 및 해촉 규정 추가
- 조례안 제6조(단원의 자격)에 나이 기준 명확화
- 조례안 제7조(해임) 제4호 해임사유에 운영위원회 심의 추가
- 조례안 제8조(겸직 금지)에 지도자 겸직 위반 시 조치사항 추가

붙임 수정동의안 1부.

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청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청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지도자의 신규 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유소년축구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임용한다.

제4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⑨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.

1.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2. 위원회의 품위와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
3. 본인의 사정으로 위원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

제6조제3항 중 “선수는 13세 이하의” 를 “선수는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13세 이하이며,” 로 하며, 제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최근 6개월간 경기 성적 및 훈련 참여율을 종합 평가한 결과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람
제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지도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, 군수는 경고, 주의,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조례(안)과 수정동의(안)의 대비표

조 례 안	수 정 동 의 안
<p>제3조(임용 등) ① ~ ④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신설></p> <p>제4조(운영위원회) ① ~ ⑦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신설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신설></p> <p>제6조(단원의 자격) ①·②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③ 유소년축구단 <u>선수는 13세 이하의 관내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재학생으로 한다.</u></p>	<p>제3조(임용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⑤ <u>지도자의 신규 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유소년축구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임용한다.</u></p> <p>제4조(운영위원회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⑧ <u>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⑨ <u>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</u> 2. <u>위원회의 품위와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</u> 3. <u>본인의 사정으로 위원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</u> <p>제6조(단원의 자격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③ ----- <u>선수는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13세 이하이며, -----</u> ----- -----.</p>

조 례 안	수 정 동 의 안
<p>제7조(해임) 군수는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.</p> <p>1 ~ 3 (생략)</p> <p>4.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</p> <p>5 ~ 7 (생략)</p> <p>제8조(겸직 금지) ① (생략) <u><신설></u></p>	<p>제7조(해임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 ~ 3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최근 6개월간 경기 성적 및 훈련 참여율을 종합 평가한 결과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람</p> <p>5 ~ 7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겸직 금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지도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, 군수는 경고, 주의,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</p>